

건설과

□ 제목 : 하천구역내 주차장 조성사업 경위 보고

< 건의내용 >

- 태화강 개방주차장 조성은 포괄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, 공청회 절차 없이 신속히 추진되었으며, 사업의 내용상 긴급성이나 재해예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임.
- 주차장과 인접한 업소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특혜로 비쳐질 소지가 있으며, 기존 불법 경작자에 대한 갑작스러운 퇴거 조치와도 맞물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- 또한, 해당 부지는 울산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, 울산시와의 공식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 또한 절차적 문제로 판단됨.
- 이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, 감사결과 재감사를 요청함.

○ 조치내용

- 「태화강(구영리 일원) 개방주차장 조성사업」은 범서읍 지역의원 이장 간담회(2024.7.31.)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를 범서읍으로 부터 전달받아 시행한 사업이며, 불법 경작물이 다수 존재하던 하천구역 내 사유지(범서읍 구영리 235-10 일원)를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된 것으로 파악됨.
- 본 사업의 명칭은 「태화강(구영리 일원) 개방주차장 조성사업」이나,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 활용(민원사항), 하천 경관 정비(불법 하천점용 정비), 향후 도로개설 계획 등을 고려한 쇄석포설 등인 점을 감안했을 때, 해당 사업은 정식 주차장 설치가 아닌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차원의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하천관리 세부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예산 전용이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본 사업은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단순 정비사업으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사항에 해당하여 시와의 사전협의나 별도 주민설명회 필요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, 해당 사업의 추진 절차상 개별법 위반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.

- 다만, '개방주차장 조성사업'이라는 명칭이 자칫 정식 주차장 설치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,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사업명 선정과 예산집행 전 단계의 사업 추진 계획수립 및 의회 사전보고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교육 등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,
- 아울러, 조성된 사업부지가 개인사업장의 전용주차장처럼 사용될 소지가 있어 공공성 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 및 사유지 경계에 헨스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향후계획

-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예정
 - 직원교육, 표지판 설치, 사유지 경계에 헨스 설치 등

○ 처리결과 : 처리완료

○ 처리부서 : 건설과